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26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0누26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 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군수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 담당변호사 [redacted]
제 1 심 판 결	[redacted]법원 2020. 2. 19. 선고 2018구합625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9. 18.
판 결 선 고	2020. 10. 23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8. 4. 6. 원고에게 한 별지 1 과세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26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4. 6. 원고에게 한 별지 1 과세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, 별지 1 과세목록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 부분,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,980원 부분, 같은 목록 순번 6 기재 취득세(가산세포함) 40,364,230원, 농어촌특별세(가산세포함) 3,722,54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이 법원의 심판 범위

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2018. 4. 6.자 별지 1 과세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, 제1심은 ① 별지 1 과세목록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의 취소 청구 부분과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,980원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, ② 같은 목록 순번 6 기재 취득세(가산세포함) 40,364,230원, 농어촌특별세(가산세포함) 3,722,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, ③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위 ①항 부분에 대하여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였고, 피고는 제1심에서 위 ②항 부분에 대하여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, 위 ①, ②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.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그 나머지 부분인 위 ③항 부분[위 처분 중 별지 1 과세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과처분(단, 각 가산금란 기재 가산금 부분 제외),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부과처분(단,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,980원 부분 제외)의 취소 청구 부분]에 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26

정된다.

2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, 제1심 판결 이유 제8쪽 제16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위 ③항 부분 청구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. 고쳐 쓰는 부분

『다. 제1주장에 관한 판단

제1과세대상 토지가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역시 원고의 채무인지에 관하여 본다.

갑 제6, 19, 20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사내이사인 AX이 2010. 6. 23.경부터 2014. 7. 28.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인 D조합으로 매달 90만 원 안팎의 돈을 송금하면서, 자신의 통장에는 'D조합 C' 또는 'D조합이자' 등으로 표기해 왔던 사실, 원고는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후 2015. 1. 20. D조합에 128,547,041원을 송금하고 위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, ① 원고는 2009. 12. 23. 제1과세대상 토지를 C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도, 원고 자신이 그 낙찰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, ② 원고는 C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이를 전부 원고의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,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, ③ 위와 같이 D조합에 송금된 대출금의 이자는 AX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26

개인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일 뿐이므로, AX이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,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, ④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는 해당 물건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원고가 C로부터 제1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한 후에 C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제1과세대상 토지가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거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역시 원고의 채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』

4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26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26

별지 1

과세목록

(단위: 원)

순번	과세대상 토지	세목	세액	가산금	합계
1	[redacted]군 L 외 1필지	취득세(가산세 포함)	6,805,560	204,160	7,991,940
		지방교육세(가산세 포함)	635,750	19,070	
		농어촌특별세(가산세 포함)	317,870	9,530	
2	[redacted]군 M 외 7필지	취득세(가산세 포함)	31,341,200	940,230	36,783,740
		지방교육세(가산세 포함)	2,914,120	87,420	
		농어촌특별세(가산세 포함)	1,457,060	43,710	
3	[redacted]군 F 외 1필지 중 4521/27120지분	취득세(가산세 포함)	1,092,640	32,770	1,281,840
		지방교육세(가산세 포함)	101,260	3,030	
		농어촌특별세(가산세 포함)	50,630	1,510	
4	[redacted]군 F 외 1필지 중 1507/9040지분	취득세(가산세 포함)	1,070,560	32,110	1,255,690
		지방교육세(가산세 포함)	99,050	2,970	
		농어촌특별세(가산세 포함)	49,520	1,480	
5	[redacted]군 N	취득세(가산세 포함)	695,860	20,870	816,190
		지방교육세(가산세 포함)	64,380	1,930	
		농어촌특별세(가산세 포함)	32,190	960	
6	[redacted]군 O 외 38필지	취득세(가산세 포함)	40,364,230	1,210,920	45,409,360
		농어촌특별세(가산세 포함)	3,722,540	111,670	
합계 93,538,760					